## ◉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-5호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05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#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

1. 대상

| 업종<br>(인허가번호) | 업체명 | 대표자 | 소재지 |
|---|---|---|---|
| 식용란수집판매업<br>(제20160059348호) | 승일축산 | 최*호 |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2길 13-9 |

2.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

○ 시정명령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○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0항 위반

-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·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,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

| 적용업종 | 인증번호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식용란수집판매업 | 제2020-1-0491호 | 정기교육훈련 미이수<br>(2020. 6. 23. ~ 2021. 12. 31.) |

4. 근거법령

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

○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4제8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[별표14의2] 제9호

5. 의견제출

○ 의견제출기한: 2023. 2. 6.(월)

○ 의견제출처: (우07978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

연락처: 02-2640-1316 / 팩스: 02-2640-1360 / email: nshyun@korea.kr

○ 제출방법: 구술・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

6. 기타사항: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,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(Tel: 02-2640-1316, Fax: 02-2640-136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